

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
지원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IT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
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, 집적생산단지를 구축하기
위하여 구미지식산업센터(이하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)의 준공에 따른
나. 국내·외 의료기기 업체 및 연구소 유치와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
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2020회계
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고자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대 표 : 장세용
- (3) 소 재 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(4) 출연예정액 : 금500,000천원(도비200,000, 시비 300,000)

나. 주요 사업

(1) 사 업 명 :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활성화 지원사업

(2) 사업기간 : 2019. 6. ~ 2021. 12.(2년7개월)

(3) 총사업비 : 14.5억원(도비 5.5 시비 9)

(4) 위 치 : 구미시 공단동 256-4(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)

(5) 사업주체 :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주 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7) 사업내용

- 기업유치 지원 :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지원
- 인프라 지원 : 분석장비 및 클린룸 등 시설 사용 지원
- 사업화 지원 : 인증지원, 마케팅 및 인력양성(인큐베이팅 지원)

(8)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재원	계	'19년	'20년	'21년
총계	총 계	1,450	450	500	500
	도 비	550	150	200	200
	시 비	900	300	300	300
기업유치 지원	소 계	676	136	270	270
	도 비	-	-	-	-
	시 비	676	136	270	270
인프라 지원	소 계	333	173	80	80
	도 비	139	39	50	50
	시 비	194	134	30	30
사업화 지원	소 계	441	141	150	150
	도 비	411	111	150	150
	시 비	30	30	-	-

(9)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예비타당성 심사 및 국책사업 확정(B/C1.02) : '10. 11.
- 예정부지 변경(舊 대우전자부지 → 공단운동장 부지) : '15. 5.
- 공단운동장 내 건축예정부지 매입(7.273m²) : '15. 7.
- 건축 실시설계 완료 : '16. 9.
-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 : '17. 2.
- 건축 착공(※ 기공식 6. 7) : '17. 5.
- 건축 준공 : '19. 7.
- 기업지원 실시 : '20. 1.
- 산학연관병 협력체계 구축 및 인허가 지원 : '20. 3.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전자의료기기산업은 기술개발과 인허가까지 장기간이 소요
되나 인구 고령화,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라 미래 성장 잠재력이
매우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
- (2)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
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들의 심화되는 경쟁에서 성장하기
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
- (3) 의료기기산업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통한 지역
내 의료기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관리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지 영 목
	담 당	채 창 수
	담 당 자	이 선 영 (480-6173)